

# 제 안 설 명 서

【서울농산물직판장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영 주 시

## 서울농산물직판장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의안 번호	213
----------	-----

제출년월일 : 2001. 8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 1. 제안이유

- 경북도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서울시 서초구(잠원동)에 소재하는 「서울농산물직판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자,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재산의 표시

- 직판장명칭 : 서울농산물직판장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6-15
- 부        지 : 2,614.6㎡(※소유자 서울시)
- 건물 현황
  - 직판장 : 건축면적 1,002.88㎡(연면적 998.84㎡) 지상 1층
  - 창    고 : 건축면적 104.4㎡(연면적 208.8㎡) 지상2층
- 건축물구조 : 철골조 조립식패널(※가설 건축물)

#### 나. 추진경위

- 2001. 3. 31 - 농수산물제1직판장 정리계획 발표(도)
- 4. 13 - 재경영주향우회에서 직판장 수탁운영계획서 제출
- 5. 23 - 건축물무상양여 신청(시→도)
- 6.  1 - 체비지대부계약체결(시↔서울시)
- 6.  4 - 직판장 무상양여(도→시)
- 6. 28 - 건축물 명의변경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승인(서울 서초구→시)
- 9.    - 직판장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 동의 후 위탁계약을 체결

다. 부지 및 건물사용허가

- 부지사용 : 매년(6.1) 서울시와 체비지대부계약 체결
- 건축물 : 매년(6.1) 서울시 서초구청에 가설건축물준치기간 연장신고

라. 운영에 따른 투자내역

- 부지사용료
  - 금액 : 72,555,150원(2001년도)
  - 납부자 : 수탁운영자(재경영주향우회)가 부담
- 직관장건물 : 도로부터 무상양여(2001. 6. 4일 이관) 받음

3. 민간위탁운영 계획(안)

가. 위탁방법 : 민간위탁운영

- 위탁자 : 영주시장
- 수탁자 : 재경영주향우회(직관장운영사업단)

나. 위탁기간 : 1년단위 계약

다. 위탁조건

- 직관장부지 사용료 수탁자가 부담
- 직관장 건축물 철거비용 수탁자가 부담(이행보증보험에 가입)
- 농산물판매금액의 1%를 직관장운영기금으로 적립
- 판매농산물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우선으로 함

라. 계약내용 : 별지(요약)

마. 기대효과

- 市 예산투자없이 농산물직관장운영이 가능함으로 재정부담이 없고, 향후 수도권내 우리지역농산물판매거점 확보와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확대에 기여 할 수 있으며,
- 직관장운영을 통하여 출향인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 향우회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4. 관련법규

##### 가.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 동조례 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 ②항 <생략>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영주시의 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나. 영주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 동조례 4조 (직판장의 운영)

직판장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판장의 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를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주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수수료)

① 제4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수수료를 월 농산물 판매금액의 1퍼센트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수수료 납입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생략>

## 서울농산물직판장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 【위탁취지】

경북도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서울시 서초구(잠원동)에 소재하는 「서울농산물직판장」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영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홍보와 판로를 확대하고자함

### 【직판장 현황】

(단위 : m<sup>2</sup>)

구 분	토 지					건 물				
	지번	지목	지적	용도	소유자	층	구조	면적	용도	소유자
부 동 산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6-15	학교 용지	2,614.6	농산물 직판장	서울 시장	1층	철골조 조립식 패널	1,002.88	직판장	영주 시장
						2층	"			

### 【위탁기간】

- 위탁기간 : 1년

### 【위탁내용】

- 농산물직판장 시설물 관리
- 지역농산물의 판매 및 우수성홍보
- 지역농산물관련 시장정보의 수집·전파
- 기타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주요계약내용

- 이하, 위탁자(영주시장)을 “갑” 이라고하고, 수탁자(재경영주향우회)를 “을” 이라 한다-

- 계약기간 : 1년(2001. 6. 1~ 2002. 6. 30)
- 직판장 운영
  - 시설물관리에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을” 이 부담
  - 직판장에서 판매되는 품목은 영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관련한 가공품으로 하고 농산물 구입은 영주관내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구입한다
  - 운영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채권·채무관계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을” 에게 있다
  - “을” 은 영주시 농산물판매 부진시 “갑” 이 추천하는 생산자가 직접 판매 토록 할 수 있으며, 계약을 취소 할 수있다
-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 시설물의 정비보수·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 이 부담
  - “을” 은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한다
- 시설물의 철거
  - 시설물 철거를 해야 할 경우 비용은 “을” 이 부담한다
- 위탁수수료
  - “을” 은 매월 농·축산물판매금액의 1%를 납입하여야 한다
- 부지임대료
  - “을” 은 직판장 부지에 부과되는 부지사용료를 납부한다
- 사업의 지도
  - 시에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수행실태를 지도·감독케 할 수 있고, “을” 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계약해지
  - “갑” 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을” 이 운영능력이 없고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있고
  - “을” 은 계약해지사항에 대하여 민법제203조,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 영주시농산물직판장 위탁관리계약서

###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6-15
- 부 지 : 2,614.6㎡(학교용지)
- 건축물 : 직판장 1,002.88㎡(연면적 998.84㎡, 철골조 조립식패널)  
창 고 104.4㎡(연면적 208.8㎡, 콘테이너 조립식)

영주시 농특산물의 판로확보와 우수성 홍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6-15에 위치한 우리농산물직판장의 운영에 대하여 위탁자 영주시를 “갑” 이라 하고, 수탁자 재경영주향우회를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운영주체)** “을” 은 “갑” 으로부터 직판장 운영을 위탁받아 시설관리 및 직판장 운영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책임지고 운영한다

**제 2 조(운영)** ① “을” 은 수탁기간중 “을” 의 책임하에 직판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직판장 운영기간중 전기, 상하수도사용료, 전화료, 오물수거료등의 제세공과금과 부지 및 시설물 관리에 부과된 일체의 비용은 “을” 이 부담 한다

③ “을” 이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영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관련 가공품으로 한다. 단, 영주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특산물과 관련 가공품은 소비자의 일괄구매 편의를 고려한 범위내에서 주요 생필품 일부를 판매 할 수 있다.

④ “을” 은 농수산물 구입에 있어 영주시내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직접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타 지역산 농·특산물을 구입 할 수 있다.

⑤ “을”은 시장가격을 면밀히 조사하여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 할 수 있는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 판매하여야 한다.

⑥ “을”은 직판장이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경영합리화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권·채무관계, 물품구입 대금지불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⑦ “을”은 영주시농·특산물의 판매계획을 수립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부진 할 경우 “갑”이 추천하는 생산자가 참여 판매토록하고 계속하여 실적이 저조 할 경우,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3 조(대금정산)** “을”이 생산농가나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 대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① “을”은 계약당시의 시설물을 인수 이용하고 직판장 운영상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되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하한다

② “을”은 “갑”이 위탁한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위탁관리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 및 양도 할 수 없다

③ “을”은 시설물의 정비보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을”은 위탁관리 받은 재산에 대하여 화재, 도난, 재해피해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갑”을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되 이와 관련한 비용은 “을”이 부담 한다

**제 5 조(시설물 철거)** ① 계약해지, 사업종료등 직판장운영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경우 직판장운영에 사용된 모든 시설물과 건축물은 “을” 이 부담하여 철거해야 한다

② “을” 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과 동시 철거이행 보증보험에 )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 에게 제출 하되 보험과관련된 비용은 모두 “을” 이 부담한다

**제 6 조(위탁운영 수수료)** “을” 은 위탁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월별 농·축산물 판매금액의 1%를 “갑” 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 하여야 한다.

**제 7 조(운영자금등)** ① “을” 은 직판장위탁 수익금 일부를 기타 재원으로 활용 할 수있다.

**제 8 조(회계관리)** ① 회계관리는 “갑” 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을” 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 에게 문서로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을” 은 회계상의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며 “갑” 이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갑” 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 9 조(부지임대료 납부)** ① “을” 은 직판장부지에 대하여 부지관할 기관이 고지하는 기간내에 부과한 연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서울시체비지 대부료부과 징수·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갑” 은 “을” 이 부지 임대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부지관할 기관의 조치 및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에 의거 연체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제 10 조 (사업의 종료)** ① “갑”은 사정에 의하여 직판장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을”에게 종료예상일 이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폐쇄 통보시 지정된 기일내에 시설물 철거등의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11 조 (사업의 지도·감독)** ① “갑”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수행 실태를 지도·감독케 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하여야 한다

② “갑”은 필요한 경우 직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속직원을 직판장에 파견근무케 할 수 있다.

**제 12 조 (계약해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직판장부지사용임대허가 및 가설건축물 존치연장이 불가 할 경우
3. “을”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4.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을”이 제①항 1, 2, 3호에 해당되어 해약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하며, 제4조 비용은 물론 민법 제 203 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③ 수탁기간중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1개월전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계약기간) ①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2001. 6. 1 ~ 2002. 5. 31(1년)으로 한다

② “을” 은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갑” 에게 문서로 통보 하여야 한다.

제 14 조 (기타) ①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의 해석은 “갑” 과 “을” 이 상호 협의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 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조례 및 관례에 따른다.

③ “을” 은 위탁관리한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 할 수 없다.

④본 계약서의 효력은 2001. 6.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본 계약이 체결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가진다.

2001 년      월      일

위탁자(갑)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2동 470번지  
영 주 시 장      (인)

수탁자(을)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0-18 삼성빌딩 5층  
재경영주시향우회장      (인)

## 의안검토보고서

### 1. 의안

- 의안번호 : 제213호
- 의안명 : 서울농산물직판장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
- 해당부서 : 산업건설국 산업과

### 2. 제안이유

경북도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서울시 서초구(잠원동)에 소재하는 「서울농산물직판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자,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추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재산의 표시

- 직판장명칭 : 서울농산물직판장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6-15
- 부 지 : 2,614.56㎡(※ 소유자 서울시)
- 건물 현황
  - 직판장 : 건축면적 1,002.88㎡(연면적 998.84㎡) 지상 1층
  - 창 고 : 건축면적 104.4(연면적 208.8㎡) 지상2층
- 건축물구조 : 철골조 조립식패널(※ 가설 건축물)

#### 나. 추진경위

- 2001. 3. 31 - 농산물제1직판장 정리계획 발표(도)
- 2001. 4. 13 - 재경영주향우회에서 직판장 수탁운영계획서 제출
- 2001. 5. 23 - 건축물 무상양여 신청(시 → 도)
- 2001. 6. 1 - 체비지대부계약체결(시 → 서울시)
- 2001. 6. 4 - 직판장 무상양여(도 → 시)
- 2001. 6. 28 - 건축물 명의변경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승인(서울 서초구 → 시)
- 2001. 9. - 직판장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 동의 후 위탁계약을 체결

다. 부지 및 건물사용 허가사항

- 부지사용 : 매년(6. 1) 서울시와 체비지대부계약 체결
- 건축물 : 매년(6. 1) 서울시 서초구청에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
- 임대료
  - 부지
    - 금액 : 매년 서초구청에서 고지하는 체비지사용료  
(2001년 72,555,150원)
    - 납부자 : 수탁자 부담
  - 건물 : 무상사용

4. 검토의견

- 서울농산물직판장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을 검토한바,  
경북도로 부터 무상양여 받아 개설코져 하는 서초구 잠원동 소재 「서울농산물직판장」은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 정한 대상사무로서 민간에 위탁운영함이 더 효과적이며 위탁자의 재정부담 없이 운영이 가능하고 수도권내 우리 농·특산물의 판매거점 확보 필요성과 실익이 있으므로 민간위탁 운영을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01. 9.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수